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904

발의연월일: 2022. 8. 18.

발 의 자:정운천・김석기・김영식

김희곤 • 노용호 • 박성민

성일종 · 송석준 · 이달곤

이용호 • 이종성 • 지성호

최춘식 의원(13인)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체제는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가속화 등 악순환을 반복시키며, 국가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음.

특히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방균형 발전에서 낙후와 소외로 피해를 받아왔던 전북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 나.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 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라.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 10조).
- 마.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 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 바.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 사.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9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 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할 수 없음(안 제26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 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 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 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 (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전북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자치도를 설치한다.

- ②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7조(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 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전북자치도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편의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전북자치도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5.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은 각각 동수로 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북자치도의 부지사 1명
-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북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 시장 또는 군수 2명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도시계획·개발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 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 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 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 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 용한다.
 -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 령을 적용한다.

-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수 있다.
- 제14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

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제17조(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 도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출연금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발전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 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업 지원
 - 2.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제19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0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2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 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

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 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 제2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북도의 폐지)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 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 제5조(종전의 전라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사무와 전라북도지사나 그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해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 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

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